

초소형자동차 간접시계장치의 설치 및 시계범위 기준(제50조제1항제1호 관련)

1. 설치기준

- 가. 초소형자동차 간접시계장치는 후사경 또는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을 적용할 것
- 나. 초소형자동차는 운전자석 및 승객석에 별표 5의7 제1호다목에 따른 실외후사장치 III(승객석에 한하여 별표 5의7 제1호나목에 따른 실외후사장치 II로 대체할 수 있다) 또는 별표 5의7 제1호사목에 따른 이륜자동차 후사장치를 각각 1개씩 설치하여야 한다.
- 다.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5의7 제1호가목에 따른 실내후사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.
- 라. 초소형자동차 간접시계장치로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별표 5의8에 적합할 것

2. 시계범위 기준

- 가. 실외후사장치 II는 별표 5의7 제1호나목, 실외후사장치 III는 별표 5의7 제1호다목에 적합할 것
- 다. 초소형자동차에 사용할 수 있는 이륜자동차용 후사장치는 별표 5의7 제1호사목에 적합할 것

3. 충격시험

- 가. 거울의 반사면은 파손되지 않을 것.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1) 거울의 깨진 부분이 붙어있거나 돌출부위가 거울면의 2.5밀리미터 이내인 경우
 - 2) 반사면이 안전유리로 제작된 경우
- 나. 초소형자동차에 사용할 수 있는 이륜자동차용 후사장치
 - 1) 100밀리미터 직경을 가지는 구와 정적으로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지지부를 포함하는 후사경의 모든 부위는 2.5밀리미터 이상의 곡률반경을 만족할 것. 다만, 폭 12밀리미터 이하의 구멍 또는 홈의 모서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2) 하중 6.8킬로그램의 진자형충격장치로 후사경을 충격할 때 거울면이 파손되지 않을 것
 - 3) 실외후사경에 정하중굽힘시험장치로 25킬로그램의 하중을 1분간 가할 때 거울면이 파손되지 않을 것
 - 4) 2) 및 3)에도 불구하고 거울면이 파손된 경우 돌출부분은 2.5밀리미터 이하일 것
- 다.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의 렌즈는 파손되지 않을 것

4. 일반기준

- 가. 거울을 이용한 간접시계장치는 조절이 가능할 것
- 나. 제2호에 따른 시계범위는 측면 창유리 또는 앞면 창유리의 창답이기에 의하여 세척되는 부분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

5. 거울을 이용한 간접시계장치는 별표 5의7 제4호에 따른 크기 및 반경에 적합할 것

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간접시계장치의 시계범위, 거울크기 및 반경, 충격시험 등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.